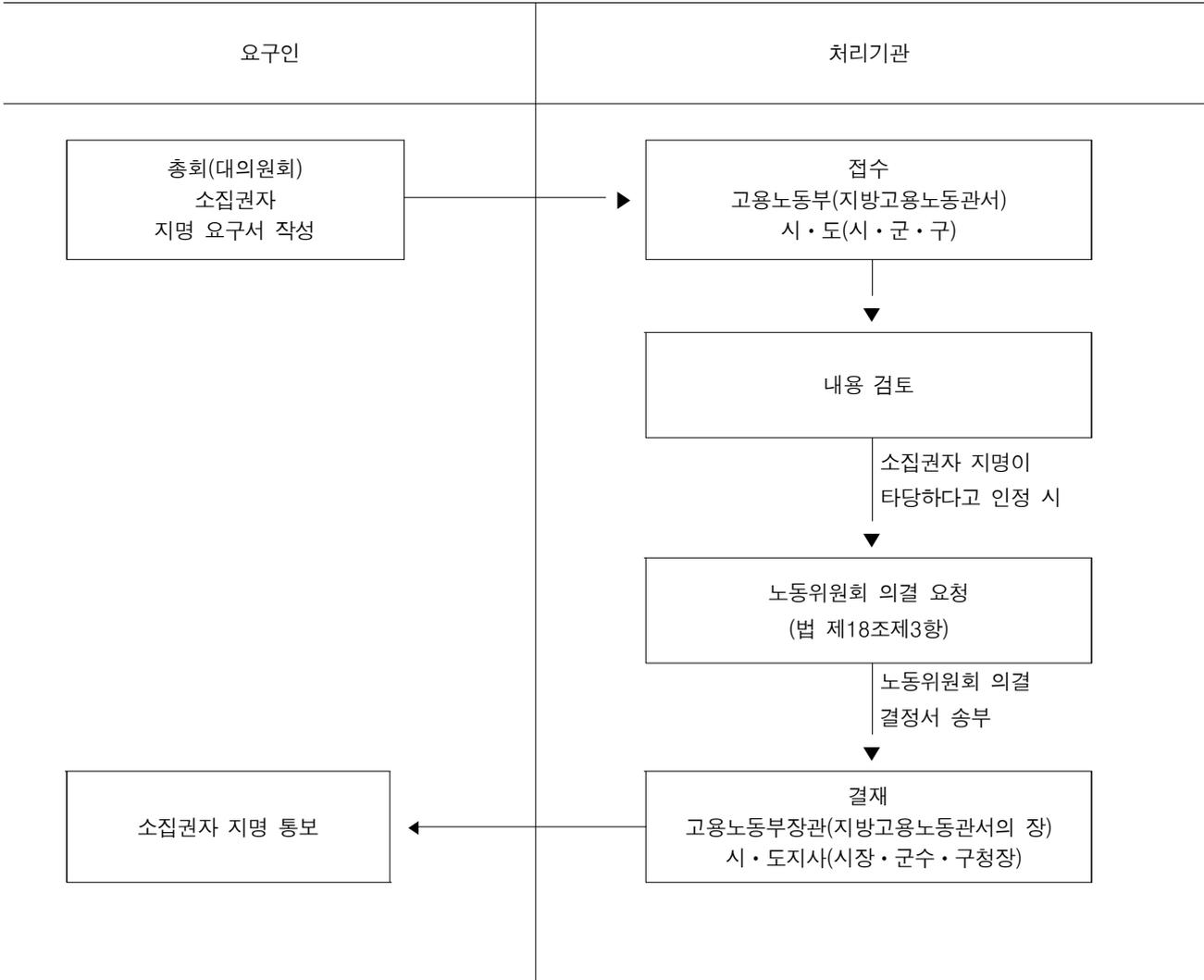


처리절차

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[] 총회 소집 요구 또는 소집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
 [] 대의원회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18조제3항·제4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(대의원회) 소집의 요구 또는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합니다.

총회(대의원회)소집 요구 사유:

연월일	소속	성명	생년월일	서명 또는 인	비고

※ 공지사항 :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